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

##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신지선  
전화 053-570-4420 / 팩스 053-570-4242

**보도자료**  
2023. 1. 27.(금)

### 제목

**수년간 지적장애인의 장애수당과 노래방 도우미 수입  
합계 약 9,400만 원을 착취한 피고인 구속기소**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
-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(부장검사 서영배)는 지난 1. 26.(목), 약 8년 간 함께 살던 피해자(여, 35세)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켜 장애수당, 피해자의 노래방도우미 수입 등 약 9,400만 원을 착취하고,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한 피고인 A(여, 45세)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직접 구속기소하고, 이에 가담한 피고인 동거남 B의 장애수당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불구속 기소하였음
-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서 전문 심리상담사 및 신뢰관계인 동석 하에 피해자 진술을 영상 녹화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,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계좌를 직접 분석하여 피해자금의 사용처를 밝혀 범행 전모를 규명하였음
- 검찰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고, 관할 주민센터와 대전발달장애인지원 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급여되는 장애수당이 피해자를 위해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
- 앞으로도 검찰은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고,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및 권리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음

## 1

### 피고인 및 피해자

- 피고인 : A○○(여, 45세, 노래방도우미), B○○(남, 42세, 회사원)
- 피해자 : C○○(여, 35세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, 지적장애 2급 상당)

## 2

### 공소사실 요지

#### ● 피고인들의 공동범행

- 공모하여 '16. 8.경 피해자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킨 후 '16. 10. 21.경부터 '21. 3. 19.경까지 총 14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장애수당 5,15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[횡령, 장애인복지법위반]
- 공모하여 '21. 3. 16.경 손과 발, 30cm 상당의 막대기 등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의 머리, 발바닥 등을 때려 [장애인복지법위반]

#### ● 피고인 A○○ 단독범행

- '19. 12. 20.경부터 '21. 9. 10.경까지 총 283회에 걸쳐 피해자가 노래방도우미로 일한 근로수입 4,280만 원 상당을 착취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[횡령]
- '20. 2. 3.경 장애인인 피해자의 뺨을 때려 [장애인복지법위반]

## 3

### 수사경과

- '21. 3. 23.~'22. 2. 3. 경찰 송치, 검찰 보완수사요구로 경찰 추가조사 후 재송치  
※ 피고인 B○○은 '21. 3. 16.경 피해자 폭행 혐의만 송치
- '22. 2.~'22. 12. 검찰, 전문 상담사와 신뢰관계인 동석한 피해자 조사, 피고인 조사, 피해자 및 피고인 계좌 전수조사 등 수사
- '23. 1. 9. 검찰, 피고인 A○○ 구속(검사 구속영장 직접 청구)
- '23. 1. 26. 검찰, 직접 보완수사로 피고인 B○○의 장애수당 횡령 공모 사실을 확인하여 추가 입건
- '23. 1. 26. A○○ 구속 기소, B○○ 불구속 기소

## 4

### 수사 의의 및 향후계획

-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 심리상담사 및 신뢰관계인 동석 하에 피해자 의사를 명확히 하고 철저한 계좌추적 등 추가수사를 통해 범행 실체를 명백히 밝힘
- 피해자의 보호 상태, 장애수당 지급 현황 등을 확인하고, 직접 피해자를 면담한 후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피해자가 주간활동서비스, 성 인권 교육, 개인별 지원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여 추가 범행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
- 향후에도 검찰은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의 전모를 밝혀 엄정 대응하고, 실질적 피해구제 및 권리회복 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음 ☑